

[별지 제5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추천자	소속 :	성명 :
--------	--------	-----	------	------

상 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사 업 장 소재지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5. 영광사랑상품권 지정 계약서 2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뒷면)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영광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급, 환전에 제한을 받을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기관	영광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 (NH농협, 지역단위농협, 축협)
제공목적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급, 환전
제공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급, 환전에 제한을 받을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협약서

본인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영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취소와 책임)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계약내용 또는 가맹점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구매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동일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거부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가맹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점에서 진위여부 등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환전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위 계약자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성명(생년월일)

(인)

연락처 :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광군이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지정된 업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에서 사용함에 있어 영광군과 가맹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가맹점 대표가 상호 서명날 인한 후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영광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3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 ① 영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군수와 가맹점 지정 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한 후 가맹점 지정서(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를 교부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취소와 책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알게 된 경우 그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맹점 지정 취소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③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구매·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 청구 및 결제)

- ① 가맹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점에 청구한다.
-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점에서 진위여부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환전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백만원으로 한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
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영광군과 가맹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영광군

가맹점

주 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상 호 :

대표자 : 영 광 군 수 (인)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연락처) :